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기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130

발의연월일: 2021. 6. 28.

발 의 자:송기헌·김남국·김종민

박성준 • 백혜련 • 소병철

송옥주 · 이광재 · 전재수

정일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업무처리과정을 연계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함으로써, 신속·공정·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 형사사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제정되었음.

그런데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, 공소 등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립되었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이 법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.

이에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위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 장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2호, 제5 조제1항, 제10조제1항 및 제17조).

법률 제 호

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"그 소속 기관과"를 "그 소속 기관, 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와"로 한다.

제5조제1항 단서 중 "해양경찰청"을 "해양경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"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"경찰청 차장 및 해양경찰청 차장"을 "경찰청 차장, 해양경찰청 차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"으로 한다.

제17조 중 "경찰청 및 해양경찰청"을 "경찰청, 해양경찰청 및 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·운영에 관한 경과조치)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·운영되는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구성·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,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"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"이	2
란 법원, 법무부, 검찰청, 경	
찰청, 해양경찰청 및 <u>그 소속</u>	<u></u>
<u>기관과</u> 그 밖에 형사사법업	소속 기관, 고위공직자범죄수
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	<u>사처와</u>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	
말한다.	<u>.</u>
3. ~ 6. (생 략)	3. ~ 6. (현행과 같음)
제5조(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	제5조(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
위한 협력 의무) ① 형사사법	위한 협력 의무) ①
업무 처리기관은 판결문, 공소	
장, 영장, 조서 등 형사사법업	
무와 관련된 문서를 시스템을	
이용하여 저장 · 보관하여야 한	
다. 다만, 업무의 성격상 시스	
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	
우에는 법무부, 검찰청, 경찰청,	
해양경찰청의 업무에 관하여는	<u>해양경찰청 및 고위공직자범</u>
대통령령으로, 법원의 업무에	<u> 죄수사처</u>
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예외	

를 정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 략)

제10조(협의회의 구성) ① 협의회는 법무부차관, 법원행정처 차장, 대검찰청 차장검사, <u>경찰청</u>차장 및 해양경찰청 차장으로 구성한다.

② (생략)

제17조(위임규정) 형사사법정보의 정확성 유지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법무부, 검찰 청, <u>경찰청 및 해양경찰청</u>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법원 관련 사항은 대법원규칙 으로 정한다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	
제10조(협의회의 구성) ①	
<u>경찰청</u>	
차장, 해양경찰청 차장 및 고위	
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	
② (현행과 같음)	
제17조(위임규정)	
경찰청, 해양경찰청 및 고	
위공직자범죄수사처	
<u>.</u>	